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1. 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7. 12. 20 (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5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사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
-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등 순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등
- 나. 입법예고 : 2007. 10. 15 ~ 11. 4 (20일간)
 - ▷ 고엽제후유의증회 사하구지회에서 공공시설 매점 등 운영 위탁권, 공원 등 입장료 감면 등의 조문 추가 요청
 - ▷ 실효성과 형평성에 저촉되어 반영불가 통보(주민생활지원과-21275, '07.11.5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국권침탈과 사변 등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자 초개 같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,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애민정신을 기리고 함양하여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교육의 자료로 삼아 국민들에게 조국사랑의 귀감이 되도록 법정화함으로써 보훈의식 고취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중구, 서구, 동래구 등 8개구에서는 기허 조례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, 북구, 영도구 등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진행 중에 있음
- 또한 「국가보훈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결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